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결핵검진등 의무 실시기관의 실시보고의무》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61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I. 개요

1. 제안 경위

- (1) 제 안 자 : 김원이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6. 28.
- (3) 회 부 일 : 2024. 7.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핵은 결핵균을 원인으로 하는 호흡기 전파 질환으로, 밀접 접촉자의 약 30%가 무증상으로 잠복감염되고, 이 중 약 10%의 감염자가 평생에 걸쳐 발병하는 감염력이 높은 질환임.

현행법은 결핵예방을 위해 의료기관·학교·유치원 등의 장은 그 기관 등의 종사자 등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결핵검진 등의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은 과태료 부과 주체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항으로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 결핵검진 이행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이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34조).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현행법상 의료기관·학교·유치원 등의 장은 그 소속 종사자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결핵검진등(결핵검진,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게 되는데, 개정안은 이처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고 받은 사항을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아울러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결핵검진등) ① ----- ----- -----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

현행	개정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 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생략)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받은 사항을 작성·보관하고,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 등과 제3항에 따른 보고, 작성·보관 및 통보방법 등에-----. 제3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 ----- -----.

2. 주요 검토 사항

□ 현행 「결핵예방법」¹⁾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종사자 및 교직원에게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참고로, 결핵검진등 의무검진기관 수 및 종사자 수는 각각 130,352개소, 1,767,858명에 이르고 있음.

1) 「결핵예방법」

제10조(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을 실시한 후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2.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학교 등의 장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핵을 조기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핵발생의 우려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결핵검진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
2. 부랑인, 노숙인, 미신고 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
3.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자
4. 그 밖에 결핵에 감염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 의무대상 현황 >

검진대상	기관 수 (단위: 개소)	종사자(명)	자료원
계	130,352	1,767,858	-
의료기관	72,790	799,548	2023 보건복지통계연보(보건복지부)
산후조리시설	456	9,625	(기관 수) 산후조리원 현황(보건복지부, 2023.12) (종사자 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제공(2023. 12)
학교	12,164	563,102	2023 교육통계연보(교육부)
유치원	8,441	60,548	2023 교육통계연보(교육부)
어린이집	30,923	311,996	2023 보건복지통계연보(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5,578	23,039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아동복지시설 현황(보건복지부, 2023. 8.)

자료: 질병관리청

그런데 현행 「결핵예방법」에는 결핵검진등 후 법적 보고 의무가 없고, 검진 의무대상자의 관련 부처가 보건복지부(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교육부(유치원, 학교) 등으로 상이하여 검진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실제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년 실시한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 점검²⁾은 「결핵예방법」 제11조의 대상자 중 ①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신생아 중환자실 종사자, ② 산후조리원 종사자, ③ 어린이집 종사자 등 신생아·영유아 관련 시설 종사자에 한정하여 이루

2) < 2020년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 점검 현황>

- 대상: 2020년 신생아·영유아 관련 시설 종사자
- 방법: 전국 보건소를 통해 점검양식을 활용
- 결과: 기관의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률은 90.1%

대상기관수	점검기관수	결핵·잠복결핵감염 (명, %)		결핵 (명, %)		잠복결핵감염 (명, %)	
		검진이행률		검진이행률		검진이행률	
38,482	34,563	31,126	(90.1)	32,945	(95.3)	32,268	(93.4)

- 한계: 대상별 관리부처가 상이하여 일부 기관 비협조적으로 점검결과의 정확도 및 신뢰도 문제 발생 등

어졌고,

2023년에도 129,961개 의무검진기관 중 15.4%인 20,064개소에 대해서만 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전수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임.

< 2023년 잠복결핵감염 검진 이행 점검 현황 >

(단위: 개소, %)

시도구분	의무검진기관 수*	점검 실시 기관 수					
계	129,961	20,064	15.4%	이행 기관 수		미이행 기관 수	
				19,571	97.5%	493	2.5%
의료기관	73,088	9,545	13.1%	9,254	97.0%	291	3.1%
산후조리업	530	122	23.0%	122	100.0%	-	0.0%
학교	12,786	2,612	20.4%	2,507	96.0%	105	4.2%
유치원	8,517	1,445	17.0%	1,396	96.6%	49	3.5%
어린이집	29,888	5,284	17.7%	5,251	99.4%	33	0.6%
아동복지시설	5,152	1,056	20.5%	1,041	98.6%	15	1.4%

* 부산광역시 중 동구·남구, 경기도 중 고양시·성남시·안성시의 의무검진기관 수 미포함
자료: 질병관리청

□ 이에 개정안은 검진 의무 이행기관의 장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후 그 실시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검진 이행 여부 점검을 통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의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³⁾.

3) 참고로,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익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110529호)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등의 사유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다만, 결핵양성자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제2급 감염병으로 24시간 내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⁴⁾, 2023년 의무검진기관 검진 이행 점검 결과를 보면, 점검실시기관 20,064개소 중 97.5%에 해당하는 19,571개소가 이행하였고, 미이행 기관 수는 2.5% 수준인 493개소인 점 등은 법안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결핵검진등 이행 의무에 대한 보고 규정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검진 이행 점검에 한계가 있으므로, 검진 이행 보고체계가 보완될 경우 검진 이행력 담보 및 법적 실효성 제고에 따라 결핵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의사협회 등의 의견은 다음 표와 같음.

<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의견 >

구 분	수용여부	제시 의견
지방자치단체	수정수용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면 설치, 신고·인가·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대구광역시)
		결핵검진 등 실시 보고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을 명시(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핵검진 의무기관에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수정(경상남도)
대한의사협회	반대	모든 의료기관이 양성 및 음성의 검사결과까지 보고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자 행정력 낭비이고, 검진 수행 여부 등의 행정관리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의 역할로 이를 민간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될 것임.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결핵(結核)

구 분	수용여부	제시 의견
대한치과의사협회	반대	개정안은 국가가 질병을 관리한다는 것보다, 관리의무를 의료기관 장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국가의 충분한 지원없이 일선 의료기관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통제와 처벌보다는 결핵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핵감염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대한한 의사협회	반대	보고 의무 대상이 되는 기관에는 행정력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결핵검진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그 검사 여부 및 결과는 건강보험공단에 모든 자료가 구축되어 있어 국가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동 관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대한병원협회	반대	건강검진 등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유사 법률과 제도에서 실시현황에 대한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고,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잠복결핵감염검진 비용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결핵검진 등 실시 의무를 넘어 검진 실시현황을 보고할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문 의 처

02) 6788-5501
